

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5일	
신고인	시설명				
	성명(대표자)				
	주소	(전화번호:)			
시설 주소		(전화번호:)			
변경사항	변경 전		변경 후		
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3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청부서류	1.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